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치안감 정원 1명과 기존 국제협력관 직위의 경무관 정원 1명을 상호 이관하여 국제협력관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국제공조1과·국제공조2과를 두면서 기존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는 국제협력과·국제공조담당관 업무는 공조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공조1과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국제공조2과로 분과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국제공조 인력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국제치안협력국으로 인력 53명(경정 5명, 경감 17명, 경위 10명, 경사 11명, 경장 10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개편으로 총액기구인 과학치안산업팀과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함에 따라 미래치안정책과에서 사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을 총액기구로 신설(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하면서, 인공지능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미래치안정책국으로 인력 3명(경감 1명, 순경 2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외사정보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치안정보국으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외사정보계 신설 및 경찰서 정보과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서 중심 지역정보 체계로 환원하기 위해 178개 경찰서에 치안정보과·20개서에 경비정보안보과를 신설하고, 센터

장을 총경으로 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신고대응센터에 정책 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총경 1명을 추가 운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인력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그 중 인력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1명씩 파견받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대응센터로 인력 50명(경감 1명, 경위 10명, 경사 13명, 경장 16명, 순경 10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대변인실에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증원하고,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고, 경찰청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력 2명(경위 2명)을 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에 국제범죄 수사 사무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 수사대를 신설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이관하고, 부산·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명칭을 마약·국제범죄수사대로 변경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전담하고, 소속기관에 국제공조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서울관악·서울영등포·화성동탄·고양·과주)함에 따라 총경 5명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규정한 별표는 직제로부터 위임받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악성사기 추

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을 증원하고,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실국 간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조정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 산하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의 수사기법 연구 개발 기능을 형사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수사기획담당관·수사심사정책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간 사무를 조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이버테러’ 용어를 정비하고,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과학수사과를 기획과 현장 연계를 전담하는 과학수사기획과로, 범죄분석과를 감정·분석·연구 개발에 특화되도록 과학수사분석과로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조정하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성매매 사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하도록 사무를 조정하고, 안보기획관리과에서 보안관찰 사무를 수행하도록 사무를 조정하고, 안보수사지휘과에 보안감찰 사무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안보수사부 및 시·도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보안감찰 사무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 및 시·도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성매매 수사를 전담하도록 조정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한시조직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산하에 데이터분석담당관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고, 데이터분석담당관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하고,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자치경찰 전담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한시정원(2년)으로 증원하고,

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형사국과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청에 신설된 국제치안협력국, 국제공조2과, 외사정보과, 신고대응센터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된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된 범죄수익추적 인력(41명), 현장감식 인력(90명), 검시조사관 인력(138명), 이의조사·범죄수사·암행순찰차 인력(22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신규로 증원된 중대재해수사 전담 인력(42명), 악성사기 추적수사 인력(78명),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37명)은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사민원상담·체납과태료 징수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368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18명을 감축하여, 경찰

청에 96명(4·5급 3명, 5급 5명, 6급 13명, 7급 21명, 8급 31명, 9급 18명, 연구사 5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827명(5급 3명, 6급 28명, 7급 108명, 8급 501명, 9급 185명, 연구사 2명)을 운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과학치안산업팀(4·5급 1명)과 데이터정책팀(4·5급 1명)을 폐지하고,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인공지능서비스팀(4·5급 1명)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0명(9급 40명)을 행정직군·특수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치안정책과·정보화기반과·장비운영과·과학치안산업팀·데이터정책팀”을 “미래치안정책과·정보화기반과·장비운영과·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치안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을 “인공지능서비스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6. 치안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
7.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
8.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 12.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조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치안산업팀장”을 “인공지능서비스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인공지능 사업 발굴·개발 및 관리
2.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기술동향·수요 분석
5.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제11조제3항 중 “치안정보상황과·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치안정보상황과·치안정보분석과·치안정보협력과 및 외사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정보업무(외사정보 업무를 포함한다)”를 “정보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며, 외사정보 활동을 포함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정보 관련 정책·법령·기획·지도·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외사정보 제도 운영·교육 등 총괄

3. 의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의사정보의 평가·분석 및 처리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범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2.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해외치안 및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종합·분석

제13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사절차상 제도·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사 관련 법령·규칙의 연구 및 관리

제1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둔다.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한다) 사건

- 다. 각종 범행 수단 생성·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  
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통계·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  
수·처리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타 국가 및 부처·기관과의 공조·협  
력·조정
- 4.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관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예방·홍보
- 5.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관한 신고·제보의 접수  
·상담·처리
- 6. 제5호의 신고·제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5조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조정
-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16조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피해자”를 “예방·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사이버테러”를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  
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이버안보”를 “사이버테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이버테러 위협”을 “사이버테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

제17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력범죄 수사과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과학수사과 및 범죄분석과”를 “강력범죄수사과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과 · 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 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폭력, 성매매 사건(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을 포함 한다)

제1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수사과장”을 “과학수사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범죄감식 및 증거수집, 범죄분석

제1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분석과장”을 “과학수사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수사기법 · 과학수사 장비의 연구 ·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2. 범죄 · 수사경력 자료 및 지문자료 등의 수집 · 관리에 관한 사무 총괄
3. 증거분석 · 감정에 관한 사무 총괄

제19조제5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40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를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마약류범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를 “마약류범죄”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  
 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제41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43조제5항제3호 중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 및 성매매”로, “단속·수  
 사”를 “단속”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마약범죄수사대”를 “마약·국제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마약범죄수사대를”을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로, “마약범죄수사대 및”을 “마약·국제범죄수사대 및”으로 한다.

제63조제5호 중 “공무원·병무·국가유산·식품·환경·총기·성매매”를 “공무원·병무·국가유산·식품·환경·총기”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 제목 “(마약범죄수사대)”를 “(마약·국제범죄수사대)”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제7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71조의3제3호 중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 및 성매매”로, “단속·수사”를 “단속”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경찰서의 등급구분)”을“(경찰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1급지 경찰서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77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9명, 행정주사보 83명, 공업주사보 31명, 시설주사보 1명)”을 “82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으로, “39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4명”을 “494명,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으로, “1명, 행정서기보 59명, 공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170명”을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학예연구사 2명)”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와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4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5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6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

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895”를 “2,024”로, 경찰공무원 계 “1,226”을 “1,353”으로, 치안감 “11”을 “12”로, 경무관 “6”을 “5”로, 총경 “57”을 “59”로, 경정 “157”을 “164”로, 경감 “391”을 “416”으로, 경위 “379”를 “408”로, 경사 “178”을 “203”으로, 경장 “32”를 “58”로, 순경 “12”를 “25”로, 일반직 계 “665”를 “667”로 한다.

별표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를 신설,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을 “19”로, 행정서기 “197”을 “196”으로, 행정서기보 “62”를 “75”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를 “25”로, 사무운영서기보 “45”를 “4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1”을 “2,120”으로, 경찰공무원 계 “1,226”을 “1,353”으로, 치안감 “11”을 “12”로, 경무관 “6”을 “5”로, 총경 “57”을 “59”로, 경정 “157”을 “164”로, 경감 “391”을 “416”으로, 경위 “379”를 “408”로, 경사 “178”을 “203”으로, 경장 “32”를 “58”로, 순경 “12”를 “25”로, 일반직 계 “761”을 “763”으로 한다.

별표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를 신설, 행정주사보 “145”를 “147”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을 “19”로, 행정서기 “221”을 “220”으로, 전산서기 “2”를 “1”로, 행정서기보 “81”을 “93”으로, 학예연구사 “4”를 “3”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를 “25”로, 사무운영서기보 “45”를 “4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01”을 “134,381”로, 경찰공무원 계 “129,853”을 “129,931”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77”을 “83”으로, 총경 “630”을 “625”로, 경정 “3,081”을 “3,132”로, 경감 “10,603”을 “10,611”로, 경위 “17,052”를 “17,071”로, 경사 “28,541”을 “28,559”로, 경장 “31,332”를 “31,327”로, 순경 “38,513”을 “38,500”으로, 일반직 계 “4,354”를 “4,356”으로, 행정서기 “1,162”를 “1,163”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 “600”을 “624”로, 공업서기보 “17”을 “18”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3”을 “64”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7”을 “168”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를 삭제, 기계운영서기보 “5”를 “4”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6”을 “15”로, 사무운영서기보 “271”을 “248”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078”을 “135,208”으로, 경찰공무원 계 “129,853”을 “129,931”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77”을 “83”으로, 총경 “630”을 “625”로, 경정 “3,081”을 “3,132”로, 경감 “10,603”을 “10,611”로, 경위 “17,052”를 “17,071”로, 경사 “28,541”을 “28,559”로, 경장 “31,332”를 “31,327”

로, 순경 “38,513”을 “38,500”으로, 일반직 계 “5,131”을 “5,183”으로, 행정  
사무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주사 “115”를 “114”로, 행정주사보 “462”를 “458”로, 공업  
주사보 “47”을 “42”로, 시설주사보 “22”를 “23”으로, 행정서기 “1,532”를  
“1,636”으로, 공업서기 “83”을 “84”로, 시설서기 “30”을 “33”으로, 공업서  
기 또는 시설서기 “58”을 “54”로 하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2  
다음에 “간호서기 1”를 신설, 행정서기보 “659”를 “667”로, 공업서기보  
“21”을 “22”로 하고, 공업서기보 22 다음에 “시설서기보 5”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3”을 “64”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7”을 “168”로, 운전서기보 “202”를 “165”로 하고, 안  
전연구사 7 다음에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를  
삭제, 기계운영서기보 “5”를 “4”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6”을 “15”로, 사  
무운영서기보 “271”을 “248”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가목의 평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평가기간란, 같은 호  
다목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라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12월 31  
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사목, 아목을 각각 마목, 바목,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제치안협력국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자. 국제치안협력국 국제공조2과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차. 치안정보국 외사정보과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카.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8명 (총경 2명, 경감 3명, 5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0 제1호마목(중전의 바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중전의 아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가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3), 4), 5), 6), 7)을 각각 1), 2), 3), 4), 5),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0 제2호 가목 1)(중전의 2))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2)(중전의 3))의 평가기간란, 같은 목 3)(중전의 4))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4)(중전의 5))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각각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나목 5), 6), 7), 8), 9)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10), 11), 12), 13), 14)를 각각 5), 6), 7), 8), 9)로 하며,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대재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2명 (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 5급 1명, 6급 6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11) 악성사기 추적수사 업무(시·도경찰청)	78명 (경감 22명, 경위 2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사 22명, 경장 12명)	
12) 관계성범죄 대응 업무(시·도경찰청)	37명 (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2호 나목 7)(종전의 1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8)(종전의 13))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1 중 “(제82조제2항 관련)”을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85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경찰공무원 계	1
경무관	1

3.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경정	2

4. 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경정	2

별표 12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2026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4명”을 “55명”으로,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명”을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로, “2026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을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명”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서비스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서비스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래치안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38명(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9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6명 및 기록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16명(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74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⑤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

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명(공업주사보 3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및 공업주사보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9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명(행정서기보 10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0명(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4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⑦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8명(행정서기 38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1명(행정서기 18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27명(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 시설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6명, 시설서기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5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8명, 행정서기 13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⑩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16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7명, 행정서기 161명, 운전서기보 130명, 학예연구사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

각 경찰서의 하부조직(제74조제1항 관련)

시·도경찰청	경찰서 명칭	하부조직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 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 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 사2과·경비과·교통과·안보 과·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 경찰청	평택경찰서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강서·서울노원경찰 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 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 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 사2과·경비교통과·치안정보 안보과
경기도남부 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영등포·서울송파· 서울동대문·서울마포· 서울광진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 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 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 사2과·경비과·교통과·치안 정보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진·부산해운대경찰 서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광주광역시 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경기도남부 경찰청	부천원미·시흥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 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 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 사2과·경비과·교통과·치안 정보안보과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종로·서울용산경찰 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 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 사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 ·안보과·치안정보과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동작·서울강동·서울서초·서울수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 경찰청	수원영통·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관악·서울구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교통과·치안정보과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울산광역시 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경기도북부 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교통과·치안정보과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중부·서울남대문·서울서대문·서울혜화·서울성북·서울성동·서울서부·서울금천·서울종암·서울방배·서울은평·서울도봉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중부·부산동래·부산영도·부산서부·부산남부·부산사상·부산금정·부산사하·부산강서·부산북부·부산기장·부산수영경찰서	
대구광역시	대구서부·대구남부·대	

경 찰 청	구북부 · 대구달서 · 대구성서 · 대구달성 · 대구강북경찰서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남동 · 인천부평 · 인천삼산 · 인천계양경찰서	
광 주 광 역 시 경 찰 청	광주동부 · 광주서부경찰서	
대 전 광 역 시 경 찰 청	대전중부 · 대전동부 · 대전서부경찰서	
울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울산중부 · 울산울주경찰서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수원장안 · 수원권선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청주홍덕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과 · 경비과 · 교통과 · 치안정보안보과
전북특별자치도 경 찰 청	전주완산경찰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창원중부경찰서	
서 울 특 별 시 경 찰 청	서울중랑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1과 · 형사2과 · 경비과 · 교통과 · 치안정보과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1과 · 수사2과 · 형사과 · 경비과 · 교통과 · 치안정보과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1과 · 수사2과 · 형사과 · 경비과 · 교통과 · 치안정보안보과
서 울 특 별 시 경 찰 청	서울양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

경 상 북 도 경 찰 청	구미경찰서	사1과 · 수사2과 · 형사과 · 경비 안보과 · 교통과 · 치안정보과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수원팔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 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 사과 · 형사1과 · 형사2과 · 경비 과 · 교통과 · 치안정보안보과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 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 사과 · 형사과 · 경비안보과 · 교 통과 · 치안정보과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중부 · 인천논현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안양동안 · 안양만안 · 군포 · 부천소사 · 부천오정 · 안 산상록 · 오산 · 화성서부 · 용인서부 · 광주 · 하남 · 의 왕 · 이천 · 안성경찰서	
경 기 도 북 부 경 찰 청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 주남부 · 남양주북부 · 파주 · 양주 · 동두천 · 구리 · 포 천경찰서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 찰 청	춘천 · 강릉 · 원주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청주상당 · 청주청원 · 충 주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천안동남 · 서산경찰서	
전 라 남 도 경 찰 청	목포 · 여수경찰서	
경 상 북 도 경 찰 청	경주 · 포항북부 · 경산 · 안동경찰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창원서부 · 마산중부 · 마 산동부 · 김해중부 · 김해 서부 · 거제 · 진해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제주동부·제주서부경찰서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광주광역시 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울산광역시 경찰청	울산북부경찰서	
경기도남부 경찰청	성남수정·성남중원·광명·화성동탄·김포경찰서	
경기도북부 경찰청	고양경찰서	
충청남도 경찰청	천안서북·아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전주덕진·군산·익산경찰서	
전라남도 경찰청	순천경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경상남도 경찰청	진주·양산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서귀포경찰서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치
부산광역시	부산연제경찰서	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치

경 찰 청		안정보과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중부경찰서	
광 주 광 역 시 경 찰 청	광주남부경찰서	
대 전 광 역 시 경 찰 청	대전대덕·대전둔산·대전유성경찰서	
울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울산동부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경 찰 청	세종남부경찰서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여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경비안보과·교통과·치안정보과
강원특별자치도 경 찰 청	동해·태백·속초·삼척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제천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논산·공주·보령·홍성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경 찰 청	정읍·남원·김제·완주경찰서	
전 라 남 도 경 찰 청	광양·고흥·해남·무안경찰서	
경 상 북 도 경 찰 청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칠곡경찰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통영·사천·밀양경찰서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과천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당진경찰서	
전 라 남 도	나주경찰서	

경 찰 청		
세종특별자치시 경 찰 청	세종북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 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 사과 · 경비교통과 · 치안정보과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강화경찰서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생활 안전교통과 · 수사과 · 경비안보 과 · 치안정보과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양평경찰서	
경 기 도 북 부 경 찰 청	가평 · 연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경 찰 청	영월 · 정선 · 홍천 · 평창 · 횡성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음성 · 영동 · 괴산 · 보은 · 옥천 · 진천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태안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경 찰 청	고창 · 부안경찰서	
전 라 남 도 경 찰 청	장흥 · 보성 · 영광 · 화순 · 함평 · 영암 · 장성 · 담 양 · 완도 · 신안경찰서	
경 상 북 도 경 찰 청	의성 · 청도 · 영덕 · 울진 · 예천 · 성주 · 청송경찰 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거창 · 합천 · 창녕 · 고성 · 하동 · 남해 · 함양 · 산 청 · 함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경 찰 청	고성 · 인제 · 철원 · 화천 · 양구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단양경찰서	
충 청 남 도	청양경찰서	

경 찰 청		
전북특별자치도 경 찰 청	임실 · 순창 · 진안 · 장수 · 무주경찰서	
전 라 남 도 경 찰 청	강진 · 곡성 · 진도 · 구례 경찰서	
경 상 북 도 경 찰 청	봉화 · 영양 · 고령경찰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의령경찰서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군위경찰서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생활 안전교통과 · 수사과 · 경비과 · 치안정보과
경 상 북 도 경 찰 청	울릉경찰서	경무과 · 범죄예방대응과 · 생활 안전교통과 · 수사과 · 치안정보 안보과

[별표 3의2]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75조제2항 관련)

시·도경찰청	경찰서 명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도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 과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홍덕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별표 12]

경찰청 공무원 한시 정원표(제86조 관련)

총계	2
경찰공무원 계	2
경감	1
경위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공조담당관 각 1명을 둔다.</u></p> <p><u>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u></p> <p><u>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u></p> <p><u>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u></p> <p><u>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u></p> <p><u>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u></p> <p><u>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u></p> <p><u>5.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p> <p><u>④ 국제공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u></p> <p><u>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u></p>	<p>&lt;삭 제&gt;</p>

공조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및 대응 업무

3. 한국경찰 연락사무소(코리안 데스크) 관련 업무

4. 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 업무의 총괄·조정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생략)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미래치안정책과·정보화기반과·장비운영과·과학치안산업팀·데이터정책팀을 둔다.

③ 미래치안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과학치안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미래치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미래치안정책과·정보화기반과·장비운영과·인공지능서비스팀-----  
-----.

③ -----  
-----  
-----  
-----  
인공지능서비스팀장-----  
-----  
-----  
-----.

④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⑤·⑥ (생 략)

⑦ 과학치안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2. 치안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

5.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6. 치안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

7.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

8.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12.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조정

13. (현행 제5호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인공지능서비스팀장-----  
-----.

1. 인공지능 사업 발굴·개발 및 관리

2.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

<신 설>

<신 설>

⑧ 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  
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4.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 개발
5.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  
관과의 교류·협력

제11조(치안정보국) ①·② (생략)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상황  
과·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  
보협력과를 둔다.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기술동향·수  
요 분석

5.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삭 제>

제11조(치안정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치안정보상황  
과·치안정보분석과·치안정보  
협력과 및 외사정보과-----  
-----.

④ (생략)

⑤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하며, 외사정보 활동을 포함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 7. (생략)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외사정보의 분석 및 관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정보업무-----  
-----  
-----

2. -----  
-----  
-----  
----- 한다)-----  
-----  
-----

3. ~ 7.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  
-- 제4호까지---

⑦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신 설>

⑧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정보 관련 정책·법령· 기획·지도·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외사정보 제도 운영·교육 등 총괄
3.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외사정보의 평가·분석 및 처리

<신 설>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 공조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2.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해외치안 및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종합·분석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② (생략)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13. (생략)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2. (생략)

3.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조정

4. (생략)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수사절차상 제도·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법령·규칙의 연구 및 관리

8. (생략)

9. 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신설>

11. 수사절차상 제도·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사 관련 법령·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 (현행과 같음)

④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삭제>

4.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

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한다) 사건

다. 각종 범행 수단 생성·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②  
(생략)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수사국) ① ~ ④ (생략)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통계·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타 국가 및 부처·기관과의  
공조·협력·조정

4.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  
해사기 범죄에 관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예방·홍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  
해사기 범죄에 관한 신고·제  
보의 접수·상담·처리

6. 제5호의 신고·제보 관련 시  
스템 운영 및 관리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조정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  
의 조사·처리

제16조(수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9. (생략)

⑥ ~ ⑧ (생략)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 9. (생략)

10.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3. (생략)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기획

⑤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9. (현행과 같음)

10. ----- 예방·피해자 -----  
-----

⑩ -----  
-----.

1.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라 한다) -----  
--

2.·3. (현행과 같음)

4. 사이버테러 -----  
-----

5. (생략)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생략)

<신설>

⑪ (생략)

제17조(형사국) ① (생략)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과학수사과 및 범죄분석과를 둔다.

④ ~ ⑥ (생략)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5. (현행과 같음)

6. 사이버테러에 관한 -----  
-----

7. (현행과 같음)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형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9호 -----  
-----  
-----.

③ -----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

가. 성폭력, 성매매 사건(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을 포함한다)

나.·다. (생략)

2. ~ 5. (생략)

⑧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개발

⑨ 범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제19조(안보수사국) ① ~ ④ (생략)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⑧ 과학수사기획과장-----  
-----.

1.·2. (현행과 같음)

3. 범죄감식 및 증거수집, 범죄분석

⑨ 과학수사분석과장-----  
-----.

1. 수사기법·과학수사 장비의 연구·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2.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지문자료 등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총괄

3. 증거분석·감정에 관한 사무 총괄

<삭제>

제19조(안보수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9. (현행과 같음)

10.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생략)

제40조(수사부) ①·② (생략)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 공조 업무

15. (생략)

④ ~ ⑥ (생략)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둔다.

② ~ ⑤ (생략)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범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  
-----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마약류 범죄 -----  
-----  
-----

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⑦ (생략)

제41조(안보수사부) ① ~ ③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1조(안보수사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략)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신설>

⑤ (생략)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 ④ (생략)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 6. (생략)

⑥ (생략)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사이버수사과·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

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 및 성매매-----  
----- 단속-----

4.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하부조직) ① -----  
-----  
-----  
-----  
-----  
-----



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 4. (생략)
5. 공무원·병무·국가유산·식품·환경·총기·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6. ~ 13. (생략)
14.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 15.·16. (생략)

제69조(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병무·국가유산·식품·환경·총기 -----  
-----
6.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5.·16. (현행과 같음)  
제69조(마약·국제범죄수사대)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

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사무

<삭제>

제70조(안보수사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5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9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p><u>&lt;신 설&gt;</u></p>	<p><u>응센터와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u></p> <p><u>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u></p> <p><u>제84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u></p> <p><u>② 데이터분석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u></p>
<p><u>&lt;신 설&gt;</u></p>	<p><u>제85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u></p> <p><u>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u></p>
<p><u>&lt;신 설&gt;</u></p>	<p><u>제86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u></p>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95	2,024	+129
경찰공무원 계	1,226	1,353	+127
·	·	·	
·	·	·	
치안감	11	12	+1
경무관	6	5	-1
총경	57	59	+2
경정	157	164	+7
경감	391	416	+25
경위	379	408	+29
경사	178	203	+25
경장	32	58	+26
순경	12	25	+13
일반직 계	665	667	+2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991	2,120	+129
경찰공무원 계	1,226	1,353	+127
·	·	·	
·	·	·	
치안감	11	12	+1
경무관	6	5	-1
총경	57	59	+2
경정	157	164	+7
경감	391	416	+25
경위	379	408	+29
경사	178	203	+25
경장	32	58	+26
순경	12	25	+13
일반직 계	761	763	+2
·	·	·	
·	·	·	
<u>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u>	<u>&lt;신 설&gt;</u>	<u>2</u>	+2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사무운영서기보	<u>45</u>	<u>41</u>	-4
·	·	·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4,301</u>	<u>134,381</u>	+80
경찰공무원 계	<u>129,853</u>	<u>129,931</u>	+78
·	·	·	
·	·	·	
치안감	<u>19</u>	<u>18</u>	-1
경무관	<u>77</u>	<u>83</u>	+6
총경	<u>630</u>	<u>625</u>	-5
경정	<u>3,081</u>	<u>3,132</u>	+51
경감	<u>10,603</u>	<u>10,611</u>	+8
경위	<u>17,052</u>	<u>17,071</u>	+19
경사	<u>28,541</u>	<u>28,559</u>	+18
경장	<u>31,332</u>	<u>31,327</u>	-5
순경	<u>38,513</u>	<u>38,500</u>	-13
·	·	·	
·	·	·	
일반직 계	<u>4,354</u>	<u>4,356</u>	+2
·	·	·	
·	·	·	
행정서기	<u>1,162</u>	<u>1,163</u>	+1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5,078</u>	<u>135,208</u>	+130
경찰공무원 계	<u>129,853</u>	<u>129,931</u>	+78
·	·	·	
·	·	·	
치안감	<u>19</u>	<u>18</u>	-1
경무관	<u>77</u>	<u>83</u>	+6
총경	<u>630</u>	<u>625</u>	-5
경정	<u>3,081</u>	<u>3,132</u>	+51
경감	<u>10,603</u>	<u>10,611</u>	+8
경위	<u>17,052</u>	<u>17,071</u>	+19
경사	<u>28,541</u>	<u>28,559</u>	+18
경장	<u>31,332</u>	<u>31,327</u>	-5
순경	<u>38,513</u>	<u>38,500</u>	-13
·	·	·	
·	·	·	
일반직 계	<u>5,131</u>	<u>5,183</u>	+52
·	·	·	
·	·	·	
행정사무관	<u>9</u>	<u>10</u>	+1

·	·	·	
·	·	·	
행정주사	<u>115</u>	<u>114</u>	-1
·	·	·	
·	·	·	
행정주사보	<u>462</u>	<u>458</u>	-4
·	·	·	
·	·	·	
공업주사보	<u>47</u>	<u>42</u>	-5
·	·	·	
·	·	·	
시설주사보	<u>22</u>	<u>23</u>	+1
·	·	·	
·	·	·	
행정서기	<u>1,532</u>	<u>1,636</u>	+104
·	·	·	
·	·	·	
공업서기	<u>83</u>	<u>84</u>	+1
·	·	·	
시설서기	<u>30</u>	<u>33</u>	+3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58</u>	<u>54</u>	-4
·	·	·	
·	·	·	
<u>간호서기</u>	<u>&lt;신 설&gt;</u>	<u>1</u>	+1
·	·	·	
행정서기보	<u>659</u>	<u>667</u>	+8
·	·	·	
·	·	·	
공업서기보	<u>21</u>	<u>22</u>	+1
<u>시설서기보</u>	<u>&lt;신 설&gt;</u>	<u>5</u>	+5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3</u>	<u>64</u>	+1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u>167</u>	<u>168</u>	+1
방송통신서기보			
·	·	·	
·	·	·	
운전서기보	<u>202</u>	<u>165</u>	-37
·	·	·	
·	·	·	

<u>학예연구사</u>	<u>&lt;신 설&gt;</u>	<u>2</u>	+2
<u>통신운영서기보</u>	<u>1</u>	<u>&lt;삭 제&gt;</u>	-1
기계운영서기보	<u>5</u>	<u>4</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6</u>	<u>15</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71</u>	<u>248</u>	-23
·	·	·	
·	·	·	

[별표 11]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82조제 2항 관련)	(제82조 ~ 제85조 관련)	
1		1. 여성안 전학교폭 력대책관	+1. 여성 안전학교 폭력대책
<u>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 한: 2027년 12월 31일)</u>	<신 설>	(존속기 한: 2027 년 12월 3 1일)	관(존속 기한: 20 27년 12 월 31일)
총계	<신 설>	1	+1
<u>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 한: 2025년 12월 31일)</u>	여성안전 학교폭력 대책관(존 속기한: 2 025년 12 월 31일)	<삭 제>	-여성안 전학교폭 력대책관 (존속기 한: 2025 년 12월 31일)
.	.	.	
.	.	.	

<p>2. <u>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u></p>	<p>&lt;신 설&gt;</p>	<p>2. <u>전기통 신금융사 기 통합 대응단 (존속기 한: 2028 년 12월 3 1일)</u></p>	<p>+2. 전기 통신금융 사기 통 합대응단 (존속기 한: 2028 년 12월 31일)</p>
<p><u>총계</u></p> <p><u>경찰공무원 계</u></p> <p><u>경무관</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1</u></p> <p><u>1</u></p> <p><u>1</u></p>	<p>+1</p> <p>+1</p> <p>+1</p>
<p>3. <u>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u></p>	<p>&lt;신 설&gt;</p>	<p>3. <u>데이터 분석담당 관(존속 기한: 202 8년 12월 31일)</u></p>	<p>+3. 데이 터분석담 당관(존 속기한: 2028년 1 2월 31 일)</p>
<p><u>총계</u></p> <p><u>경찰공무원 계</u></p> <p><u>총경</u></p> <p><u>경정</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3</u></p> <p><u>3</u></p> <p><u>1</u></p> <p><u>2</u></p>	<p>+3</p> <p>+3</p> <p>+1</p> <p>+2</p>

4. <u>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u>	<신 설>	<u>4. 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u>	+4. 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3	+2
<u>경찰공무원 계</u>	<신 설>	3	+3
<u>충경</u>	<신 설>	1	+1
<u>경정</u>	<신 설>	2	+2